

일련 번호	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실제 이용 상황	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	소유자		관계인	
									주소	성명	주소	성명
3	기정	충남 보령시 신흥동	946-11	전	866	866	잡종지	계획관리 지역 관광· 휴양개발 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관녹지 (V-1) (저축)	충남 홍성군 홍북면 내덕리 113-1	농업 회사 법인 주식 회사 사조 농산	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107-39 (충정로2가)	사조 산업 주식 회사
	변경	충남 보령시 신흥동	946-11	전	866	866	-	계획관리 지역 관광· 휴양개발 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관녹지 (V-1) (저축)	충남 홍성군 홍북면 내덕리 113-1	농업 회사 법인 주식 회사 사조 농산	서울시 서초구 남부 순환로 2159 (방배동)	주식 회사 사조 대림
4	기정	충남 보령시 신흥동	946-39	임야	529	529	잡종지	계획관리 지역 관광· 휴양개발 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관녹지 (V-1) (저축)	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34, 375동 202호 (금정동, 소월아파 트)	남상익	전북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29 (전주서신 지점)	고창군 수산업 협동조 합
	변경	충남 보령시 신흥동	946-39	임야	529	529	-	계획관리 지역 관광· 휴양개발 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관녹지 (V-1) (저축)	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34, 375동 202호 (금정동, 소월아파 트)	남상익	전북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29 (전주서신 지점)	고창군 수산업 협동조 합
											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143 (동산동지점)	서천서 부수산 업 협동조 합

※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(☎ 02-748-4246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위의 국방·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(안)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(☎ 02-748-564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.

● 환경부고시제2016-65호

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「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」(환경부고시 제 2015-238호, 2015.12.28.)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6년 4월 1일

환경부장관

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

1. 개정부분

구분	번호	제목
신설	ES 04451.0	방사성 핵종-감마선 고분해능 분광법

2. 세부개정 내용의 확인

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e.go.kr>, 법령/정책-환경법령- 고시·훈령·예규)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●국토교통부고시제2016-148호

공공주택(행복주택)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(대구신서혁신 A-3BL)

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35조 규정에 따라 대구신서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-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4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사 업 명 : 대구신서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-3BL 공공주택(행복주택)건설사업

2. 사업시행자

가.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황 종 철

나.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3. 사업개요

가. 대 지 위 치 : 대구광역시 동구 사북동 851(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-3BL)

나. 사 업 면 적 : 31,682.70m²

다. 대 지 면 적 : 31,682.70m²

라. 연 면 적 : 59,950.01m²

마. 사 업 규 모 : 아파트 6개동(행복주택 1,088세대, 10~19층) 및 부대·복리시설

바. 구 조 :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

4. 사 업 비 : 94,919,656천원 (주택도시기금 39,015,680천원)

5. 사업기간 : 2014. 10. ~ 2017. 06.

6. 기 타 :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, 대구광역시 도시재생과,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(053-603-2562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●국토교통부고시제2016-150호

도로구역 결정(변경 또는 폐지)

「도로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(변경)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6년 4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